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8가합588336, 2019가합557629(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2029212, 2021나2029229(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8가합588336, 2019가합557629 판결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혁

피고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민

3. D 유한회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남영수

변론 종결2021. 5. 28.

판결 선고2021. 7. 2.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1. 7.

-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D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7. 12. 13. 체결된 각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D 유한회사에게, 별지1 목록 중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13. 접수 제17506호로 마친, 제14 내지 3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13. 접수 제17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유한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한 건설사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건축업, 토목공사업,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 유한회사는 골프장업 등 체육시설 운영업,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이하 회사명 표시에서 편의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나. 피고 C의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1) 피고 C는 경남 거창군 E 일원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경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수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사업부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C는 2015. 3. 30. 계약금액을 50,000,000,000원, 착공일을 2015. 4. 12., 준공예정일을 2017. 3. 12.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2015. 3. 30.자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C는 2015. 8. 10. 계약금액을 35,000,000,000원, 착공일을 2015. 8. 10., 준공예정일을 2017. 3. 10.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2015. 8. 10.자 도급계약'이라 하고, 2015. 3. 30.자 도급계약과 2015. 8. 10.자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는 2015. 8. 10.자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특약조건 약정서'(이하 '최초 특약조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최초 특약조건 약정서의 내용에 "피고 C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4항 준공예정년월일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피고 C는 원고에게 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특약조건 약정서'(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 및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2015. 8. 10.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초과하도록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자, 원고는 2017. 5. 23.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8063호로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 따른 위약금 3,500,000,000원(= 계약금액 35,000,000,000원 × 10%) 중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하였으며, 피고 C가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타채616호로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게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및 예치금 중 2,251,861,6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7. 3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2017. 8. 21. 채무자인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어 2017. 8. 29. 확정되었다.

마. 피고 C의 부동산 매도 및 사업권 양도

1) 피고 C는 2017. 5. 2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과 그 인근 토지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피고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25.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위와 같이 피고 D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피고 D 또는 피고 D이 지정하는 신탁사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 D과 피고 B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 D과 피고 B은 2017. 12. 13. '피고 B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신탁받아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한 후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14 내지 3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구분하여 2개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별지1 목록 중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7506호로, 제14 내지 3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7507호로 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D과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의 PF자금 대출은행인 F은행을 제1, 2순위 우선수익자로, 이 사건 골프장 시공사 G(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피고 D과 G은 책임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자들인 H은행, I, J을 각 제4, 5, 6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고, 피고 D은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이후 피고 B은 2018. 1. 11. 거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2019가합557629)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 C는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 착수를 계속 유예시킴으로써 2015. 8. 10.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경과하도록 착공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을 무단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5. 8. 10.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3,500,000,000원(= 계약금액 35,000,000,00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중 위약금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나머지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K는 2017. 5. 23. 자신을 유일한 사원이자 이사로 하는 회사인 피고 D을

설립하고, 다음날인 2017. 5. 24.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피고 D에게 불과 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7. 5. 25.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는 강제집행면탈 또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 C와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잔존 위약금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가)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다. 피고 C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거창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산지복구비에 대한 이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최초 특약조건 약정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위약금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C 명의 인영 역시 피고 C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는 원고 측에 의하여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 가)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약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C는 재정난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처분해서라도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피고 D에 실제로 매도하였고,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 1,000,000,000원은 적절한 가격이었으며, 이후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을 뿐,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위약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수로부터 2008. 2. 2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사업부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전용기간: 2008. 3. 13. ~ 2011. 3. 12.)를 받고 2008. 3. 1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인가기간: 2008. 3. 13. ~ 2011. 3. 12.)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사업 관련 산지전용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전용 및 인가기간은 2015. 3.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거창군수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2008. 2. 22. 피고 C에게 산지복구비 예치금을 처음으로 부과한 이래 2010. 4. 26.까지 산지복구비 예치금 10,469,507,00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C는 L회사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산지복구비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C가 그 이후 추가 부과된 산지복구비 예치금 3,043,963,340원을 납부하지 않고 위 L회사 발급 이행보증서의 보험기간도 만료되자, 거창군수는 2014. 7. 10.경 L회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한편, 2014. 9.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L회사는 거창군수로부터 위와 같이 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자 2014. 7. 11.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6139호로 청구금액을 위 이행보증금액인 10,469,507,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7. 23.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15. 3. 30.자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예정일 등이 기재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지복구비 이행보증금(13,513,470,340원1)) 일체를 원고의 보증으로 M공제조합을 통해 피고 C가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관련기관에 납부토록 한다.", "금번 산지복구비 보증증권 발행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M공제조합 출자좌수 소모와 관련하여 피고 C는 향후 원고의 M공제조합 출자좌수 보충 책임을 지기로 하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한 '특수조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C는 2015. 3. 12. 거창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연장을 신청하는 한편, 2015. 6. 11. L회사으로부터 보험기간을 2016. 3. 12.까지로 연장한 10,469,507,000원 상당의 산지복구비 이행보증서를 재발급받아 이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인가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이행보증서를 접수하지 않고 2015. 6. 2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피고 C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고, 2015. 6. 26. 이를 피고 C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 C는 2015. 7. 8.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2015. 8. 10.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최초 특약조건 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L회사의 이행보증서 재발급을 반영하여 "산지복구비 이행보증금(3,043,963,340원)을 원고의 책임으로 M공제조합을 통해 피고 C가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관련기관에 납부토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6. 위 2015. 6. 26.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5. 8. 10.자 도급계약에 따라 2015. 11. 26. M공제조합으로부터 추가 부과된 산지복구비 예치금 3,043,963,340원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산지복구비 예치금 895,692,660원이 추가 부과되자, 원고는 2016. 6. 30. M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이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이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였다.

자) 원고와 피고 C는 2015. 8. 10.자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예정일 등이 기재된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2)와 최초 특약조건 약정서(갑 제3호증의 1)를 각 작성하였다. 이후 2015. 8. 10.자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총 3개의 '특약조건 약정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이 없으나, 두 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갑 제3호증의 3)에는 "피고 C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원고와의 도급계약은 해지할 수 없으며, 부득이 계약해지가 필요할 시 피고 C는 원고에게 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별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가장 늦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에도 '준공예정일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피고 C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별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특약조건 약정서에는 모두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5. 8. 10.자 도급계약과 관련한 문서로 위와 같이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2)와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4개의 '특약조건 약정서'〔㉠ 갑 제3호증의 1(최초 특약조건 약정서), ㉡ 갑 제3호증의 2, ㉢ 갑 제3호증의 3, ㉣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각 증거의 제출 경위 및 형상은 아래와 같다.

(1) 위 '표준도급계약서' 중 갑 제2호증의 2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을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2는 피고 C가 가져간 원본에 대한 사본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해당 사본을 다시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다. 위 각 문서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날인된 인영의 위치 등에 차이가 있다.

(2) '특약조건 약정서' 중 갑 제3호증의 1(최초 특약조건 약정서)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본을 다시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고, 갑 제3호증의 2, 3은 각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을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다.

(3)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로는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이 제출되었는데, 위 '표준도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그중 갑 제2호증의 1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을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은 피고 C가 가져간 원본에 대한 사본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해당 사본을 다시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다. 위 각 문서 역시 내용은 동일하지만 날인된 인영의 위치 등에 차이가 있다.

(4) 원고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갑 제2호증의 1)의 뒷면과 원고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의 앞면에는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각 인장이 간인(間印)되어 있고, 위 각 문서의 우측에는 위 각 인장이 계인(契印)되어 있다.

(5) 원고가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표준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의 앞면에는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각 인장이 간인되어 있고[다만, 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갑 제4호증의 1)는 원고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4)항과 달리 뒷면의 간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위 각 문서의 좌측에는 위 각 인장이 계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궁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 23 내지 27, 29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서 '준공예정일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피고 C가 원고에게 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2015. 8. 10.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인 2017. 3. 10.까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최초 특약조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 현출된 피고 C 명의 인영과 최초 특약조건 약정서에 현출된 피고 C 명의 인영, 피고 C의 인감증명서에 현출된 인영은 육안으로 보기에 서로 유사해 보이고,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각 인영이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2018. 5. 23.자 감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서는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외관상 특별한 상이점은 관찰되지 않고, 미세특징검사에 의하더라도 각 인영 사이에 유사점이 관찰되며, 다만 기하학적 분석 및 중첩시험에 의하면 세부적인 차이점이 관찰되나 이는 사본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이 요구된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 현출된 피고 C 명의 인영과

실제 피고 C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C는 2018. 5. 28. 원고 대표이사 N이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N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015. 8. 10.자 표준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의 각 사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 5. 23. '사본의 경우 감정자료로 부적합하여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갑 제2호증의 1)의 뒷면과 2015. 8. 10.자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의 앞면에는 원고와 피고 C 명의 각 인장이 간인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인영의 간격, 각 간인의 형상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영은 각 하나의 날인행위로 인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갑 제2호증의 1, 2는 순서대로 함께 편철된 후 갑 제2호증의 1을 접어 그 뒷면과 갑 제2호증의 2의 앞면에 걸쳐 위 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간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 2개는 각 우측(갑 제2호증의 1) 또는 좌측(갑 제4호증의 1)에 원고와 피고 C 명의 각 인장이 계인되어 있고, 2015. 8. 10.자 표준도급계약서 2개에도 각 우측(갑 제2호증의 2) 또는 좌측(갑 제4호증의 2)에 원고와 피고 C 명의 각 인장이 계인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인영의 위치 및 간격, 각 계인의 형상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인은 각 하나의 날인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4호증의 1은 같은 기회에 작성되어 위 각 문서의 우측과 좌측이 맞붙게 놓은 후 위 각 문서에 걸쳐 위 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계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의 2와 갑 제4호증의 2 역시 같은 기회에 작성되어 마찬가지로 계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원고와 피고 C가 같은 기회에 각 두 장의 문서를 작성하고 간인 및 계인을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졌다면, 원고가 사본만을 소지하고 있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원본을 피고 C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C 스스로도 2015. 8. 10.자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적어도 위 문서들 중 갑 제4호증의 2(표준도급계약서)의 원본은 계약 당시 수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C가 그 원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해당 원본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사본(갑 제4호증의 2)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위 각 간인 및 계인의 위치, 간격, 형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C는 2015. 8. 10.자 표준도급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계속된 경영난으로 인한 경영진 교체 등의 과정에서 문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5. 8. 10.자 도급계약과 관련한 문서들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피고 C의 변소 역시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⑥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8. 1. 22.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가합100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1.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피고 C는 N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고소를 취소하였고, 수사 결과 N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가 실제 위조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소 취하 및 고소 취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피고 C는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⑦ 피고 C는 원고가 계약금액이 35,000,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산지복구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의 전 대표이사 O, 부사장 P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 Q협회가 산정한 원고의 2015년 한 해 토목건축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6,173,000,000원인 점, ㉡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약 1년 7~11개월에 달하였던 점, ㉢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원고는 여러 업체들과 함께 공사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실제 도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합계 14,409,163,000원[= L회사의 이행보증금액 10,469,507,000원 + M공제조합의 이행보증금액 3,939,656,000원(= 3,043,963,340원 + 895,692,660원)]에 달하는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C는 원고가 그

대가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단지 산지복구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⑧ 피고 C는 이 사건 특약조건 약정서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피고 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는 산지복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L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포함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원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로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을 추가해 달라는 원고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상당한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위약금 3,500,000,000원 중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원고가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200,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2019가합557629 손해배상(기)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9.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위 위약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9. 10. 9. 이전에 피고 C에 대하여 위 위약금 잔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1, 22, 28, 31, 32호증, 을 제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의 위약금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피고 D은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인 K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전날인 2017. 5. 23.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D으로서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약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 C는 2012년경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이후에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는 경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약금 채권행사가 방해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④ 피고 D은 피고 C에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 C의 R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1. 5.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 C, D와 R회사 명의의 2017. 5. 24.자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서가 2018. 1. 12.경 소급적으로 작성된 점, 위 합의서 작성 당시 K는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대표이사, R회사의 대표자 이사였던 점, 피고 C는 2021. 2. 18. 피고 D를 상대로 '피고 D이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14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이 실제 매매대금 1,0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C의 R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피고 D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만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까지 매도하였고, 이에 더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전부를 피고 D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 C는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위약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 D의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계속해서 자본잠식 상태였고,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6. 4. 20.자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S)에 따라 진행되었던 경매절차에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2016. 5. 9. 기준 시가는 합계 27,910,555,700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D에 대출을 실행한 대주단의 의뢰로 진행된 감정평가에서는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2017. 10. 10. 기준 시가가 합계

21,343,524,080원으로 감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5. 24. 당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액은 위 각 금액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5. 24. 당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는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 합계는 28,347,000,000원에 달했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26,115,000,000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는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일부 토지(4필지)의 2017. 1. 1.자 개별공시지가가 2016. 1. 1.자 개별공시지가보다 10%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5. 24. 당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액은 위 2016. 5. 9. 기준 시가 27,910,555,700원보다 10% 이상 상승하여 30,000,000,000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액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없었다면 피고 C로부터 위약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2018가합588336)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D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 또는 피고 C의 전 대표이사인 ○ 개인의 채권자들(H은행, I, J 등)과 합의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채권자들을 제4, 5, 6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피고 D 스스로가 후순위 수익자가 된 이른바 자익신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제1, 2순위 우선수익자인 F은행은 이 사건 사업의 PF자금 대출은행이었고, 제3순위 우선수익자인 G은 이 사건 골프장의 시공사였으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서 F은행 및 G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것은 피고 D이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변제력을 갖게 될 최선의 방법에 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F은행, G에 우선수익권이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행, I, J 등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자들이었는데,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대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제4, 5, 6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H은행, I, J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었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이 위 H은행, I, J 등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장민경

판사오주훈

별지

1) 위 10,469,507,000원과 3,043,963,340원의 합계액이다.